

수령번호: 육군성 수령 육지밀수(陸支密受) 제2197호

기안 부처(과명): 병무과

건명: 군 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

육지밀(陸支密)

부관(副官)이 북지방면군 및 중지파견군 참모장에게 보내는 통첩안

지나사변[支那事變, 중일전쟁] 지역의 위안소 설치를 위해 내지[內地, 일본 영토로 식민지 등은 외지로 구분한 차별어]에서 이를 위한 종업부 등을 모집할 때 일부러 군부 양해 등의 명의를 이용해서 이로 인해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한편 일반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자 혹은 종군기자, 위문자 등을 통해서 통제 없이 모집하여 사회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자 혹은 모집에 임하는 자의 인선이 적절하지 않아 이로 인해 모집 방법이 유괴와 비슷하여 경찰 당국에 검거되어 취조받는 자가 있는 등,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들 모집 등을 할 때는 파견군에서 통제하여 이에 임하는 인물 선정을 주도면밀하게 하고, 실시는 관계 지역의 헌병 및 경찰 당국과 연계를 밀접하게 하고, 그 다음 군의 위신 유지와 함께 사회문제 측면에서 실수가 없도록 신경 써 주기를 명령에 의해 통첩한다.

육지밀(陸支密) 제745호 1938년 3월 4일